

#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9.30)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녹색친구들)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녹색친구들의 사회적주택

**Blend.ME**

개인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Blend.WE**

즐거운 만남이 있는 **우리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자립'에서 '연대'로  
맛과 풍미가 더 깊이 우러나는 관계의 블렌딩(Blending)  
다채로운 삶의 풍경이 공존하는 **소셜커뮤니티 사회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30)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3) 예술인

## 1. 모집일정

### 모집공고

2019.09.30 ~ 2019.11.25

### 주택개방

추후 공지

## 서류접수 ▶ 자격심사(서류·전화 인터뷰) ▶ 대상자발표

### 서류 접수 기간

2019.09.30. ~ 2019.11.25

### 자격심사 소요 기간

접수 회차별 끝나는 날 기준으로 8주 이내

	접수 회차	인터뷰일자	결과 발표	계약체결
1차	09/30(월) ~ 10/21(월)	10/21(월), 22(화)	12/06(금)	12/09(월), 10(화)
2차	10/22(화) ~ 10/28(월)	10/28(월), 29(화)	12/13(금)	12/16(월), 17(화)
3차	10/29(화) ~ 11/04(월)	11/04(월), 05(화)	12/20(금)	12/23(월), 24(화)
4차	11/05(화) ~ 11/11(월)	11/11(월), 12(화)	12/27(금)	12/30(월), 31(화)
5차	11/12(화) ~ 11/18(월)	11/18(월), 19(화)	20/01/03(금)	20/01/06(월), 07(화)

※ 접수 회차는 자격심사 소요 기간을 고려한 구분임

※ 세대별 지원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입주 지정 기간

2019.11.01. (금) ~ 2020.01.31. (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주택 입주자 필수 교육

대상자	전체 입주자
일정	2020년 01월 / 3회 중 1회 참석
장소	장소 추후 공지 예정
비고	실 입주자 전원 필수 참석 (A 백년빌의 경우 2인 이상)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친구들 및 사회적주택 소개</li> <li>-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공유</li> <li>- 사회적주택 입주희망자 취향찾기 프로그램 등</li> </ul>

## 2. 공급주택

	주택명	공급호수	도로명 주소 (지번)
A	백년빌	9 / 투룸	구로구 개봉로17길 30-4 (개봉동 326-12)
	<b>다양가족주택</b> 개인이 이루는 다양한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 * 가족(혼인 중인 아닐 것), 지인 등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 (비혈연관계 가능) * 1인 가구 신청자와 동일하게 계층에 맞춰 서류 심사 진행 * 구성원 전원 조건 충족 시 입주 가능		
B	비전파크타운	16 / 원룸	구로구 경서로5길 7-6 (고척동 133-14)
	<b>생태주의주택</b> 각자의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는 불편한 삶을 지향하는 분 우선 모집		
C	개봉파크빌 1	13 / 원룸	구로구 경인로33라길 36 (개봉동 139-1)
	<b>여성주의주택</b> 여성주의 문화를 주거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분 우선 모집		
D	개봉파크빌 2	16 / 원룸	구로구 경인로33마길 4-7 (개봉동 131-5)
	<b>취향발견주택</b>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개인의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려는 분 우선 모집		
E	광성주택	20 / 원룸	구로구 고척로37길 21 (고척동 251-47)
	<b>교육나눔주택</b>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을 서로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 우선 모집		

\* 주택 별 입주자를 위한 개별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주택의 특징에 따라 운영될 예정

\* 주택 및 개별 세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녹색친구들 블로그 ([blog.naver.com/greenfriendsco](http://blog.naver.com/greenfriendsco))에서 확인 가능

## A. 백년빌

구로구 개봉로 17길 30-4 (개봉동 326-12)

**다양가족주택 (개인이 이루는 다양한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

- \* 가족(형제 자매 등, 혼인 중인 아닐 것), 지인(비혈연관계) 등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
- \* 1인 가구 신청자와 동일하게 계층에 맞춰 서류 심사 진행
- \* 구성원 전원 조건 충족 시 입주 가능

### 주택정보

사용승인일	2018.12.31
층수	5층
주용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			임대조건		비고	
호수	구분	임대면적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1	201호	투룸	57.00	50.11	6.89	33,600,400	437,707	
2	202호	투룸	61.27	53.86	7.41	35,387,300	461,087	
3	203호	투룸	67.33	59.19	8.14	37,675,200	490,813	
4	301호	투룸	57.00	50.11	6.89	33,600,400	437,707	
5	302호	투룸	61.27	53.86	7.41	35,387,300	461,087	
6	303호	투룸	67.33	59.19	8.14	37,675,200	490,813	
7	402호	투룸	64.88	57.03	7.85	36,289,100	472,777	베란다
8	501호	투룸	51.50	45.27	6.23	29,709,300	387,106	베란다
9	502호	투룸	51.50	45.27	6.23	29,709,300	387,106	베란다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개별시설

기본 옵션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난방방식	개별난방
관리비	60,000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 별 다용도실 (세탁기 비치 가능)

#### 공용시설

커뮤니티룸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수납장 등
1F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거치대 등
5F	옥상마당

## B. 비전파크타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5길 7-6 (고척동 133-14)

생태주의주택 (각자의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는 불편한 삶을 지향하는 분 우선 모집)

### 주택정보

사용승인일	2018.08.28
층수	5층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			임대조건		비고	
호수	구분	임대면적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1	201호	개방형원룸	32.52	28.22	4.30	19,438,800	253,339	
2	202호	개방형원룸	32.73	28.4	4.33	19,555,700	254,675	
3	203호	개방형원룸	33.90	29.41	4.49	20,040,000	261,188	
4	204호	분리형원룸(1.5룸)	41.50	36.00	5.50	24,749,400	322,477	
5	205호	분리형원룸(1.5룸)	40.36	35.02	5.34	24,081,400	313,793	
6	301호	개방형원룸	32.52	28.22	4.30	19,438,800	253,339	
7	302호	개방형원룸	32.73	28.4	4.33	19,555,700	254,675	
8	303호	개방형원룸	33.90	29.41	4.49	20,040,000	261,188	
9	304호	분리형원룸(1.5룸)	41.50	36.00	5.50	24,749,400	322,477	
10	305호	분리형원룸(1.5룸)	40.36	35.02	5.34	24,081,400	313,793	
11	401호	개방형원룸	31.23	27.1	4.13	18,303,200	238,309	
12	402호	개방형원룸	38.69	33.57	5.12	23,096,100	300,934	베란다
13	403호	개방형원룸	31.74	27.54	4.20	16,633,200	216,766	베란다
14	404호	분리형원룸(1.5룸)	36.96	32.07	4.89	18,486,900	240,814	
15	501호	분리형원룸(1.5룸)	44.24	38.39	5.85	20,407,400	266,031	베란다
16	503호	분리형원룸(1.5룸)	34.56	29.96	4.57	17,401,400	226,786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개별시설

기본 옵션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난방방식	개별난방
관리비	50,000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 별 다용도실 (세탁기 비치 가능)

#### 공용시설

커뮤니티룸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수납장 등
1F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5F	옥상마당

### C. 개봉파크빌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라길 36 (개봉동 139-1)

여성주의주택 (여성주의 문화를 주거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분 우선 모집)

#### 주택정보

사용승인일	2019.01.31
층수	5층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			임대조건		비고	
호수	구분	임대면적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1	201호	분리형원룸(1.5룸)	42.09	35.73	6.36	25,100,100	327,320	
2	202호	개방형원룸	34.09	28.94	5.15	21,192,300	275,550	
3	203호	분리형원룸(1.5룸)	44.02	37.36	6.66	26,302,500	342,350	
4	204호	개방형원룸	34.92	29.64	5.28	21,643,200	282,230	
5	301호	분리형원룸(1.5룸)	42.09	35.73	6.36	25,100,100	327,320	
6	302호	개방형원룸	34.09	28.94	5.15	21,192,300	275,550	
7	303호	분리형원룸(1.5룸)	44.02	37.36	6.66	26,302,500	342,350	
8	304호	개방형원룸	34.92	29.64	5.28	21,643,200	282,230	
9	401호	분리형원룸(1.5룸)	42.09	35.73	6.36	24,649,200	320,640	
10	402호	개방형원룸	34.34	29.15	5.19	21,042,000	273,880	베란다
11	403호	분리형원룸(1.5룸)	52.35	44.43	7.92	30,661,200	399,130	베란다
12	501호	개방형원룸	34.81	29.55	5.26	20,440,800	265,530	
13	503호	개방형원룸	33.84	28.72	5.12	19,989,900	260,520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개별시설

기본 옵션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난방방식	개별난방
관리비	50,000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 별 다용도실 (세탁기 비치 가능)

##### 공용시설

커뮤니티룸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수납장 등
1F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5F	옥상마당

## D. 개봉파크빌2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4-7 (개봉동 131-5)

**취향발견주택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개인의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려는 분 우선 모집)**

### 주택정보

사용승인일	2019.02.21
층수	5층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			임대조건		비고	
호수	구분	임대면적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1	201호	분리형원룸(1.5룸)	46.21	38.3	7.91	26,903,700	350,700	
2	202호	개방형원룸	35.83	29.7	6.13	20,891,700	272,210	
3	203호	분리형원룸(1.5룸)	41.06	34.03	7.03	23,897,700	310,620	
4	204호	개방형원룸	31.96	26.49	5.47	18,637,200	242,150	
5	205호	개방형원룸	35.63	29.53	6.10	20,741,400	270,540	
6	301호	개방형원룸	46.21	38.3	7.91	26,903,700	350,700	
7	302호	개방형원룸	35.83	29.7	6.13	20,891,700	272,210	
8	303호	분리형원룸(1.5룸)	41.06	34.03	7.03	23,897,700	310,620	
9	305호	개방형원룸	35.63	29.53	6.10	20,741,400	270,540	
10	401호	분리형원룸(1.5룸)	53.29	44.17	9.12	29,759,400	387,440	베란다
11	402호	분리형원룸(1.5룸)	53.43	29.36	6.07	20,290,500	263,860	
12	403호	개방형원룸	31.96	26.49	5.47	18,336,600	238,810	
13	404호	개방형원룸	35.63	29.53	6.10	20,440,800	265,530	
14	501호	개방형원룸	34.87	28.9	5.97	20,140,200	262,190	
15	502호	개방형원룸	51.69	42.84	8.85	28,106,100	365,730	베란다
16	503호	개방형원룸	35.63	29.53	6.10	19,989,900	260,520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개별시설

기본 옵션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난방방식	개별난방
관리비	50,000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b>개별 공과금 별도</b>
비고	각 호실 별 다용도실 (세탁기 비치 가능)

#### 공용시설

커뮤니티룸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수납장 등
1F	무인택배함 (우편·택배), CCTV,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5F	옥상마당

## E. 광성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37길 21 (고척동 251-47)

**교육나눔주택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을 서로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 우선 모집)**

### 주택정보

사용승인일	2018.09.04
층수	5층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			임대조건		비고	
호수	구분	임대면적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1	201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8,820,900	245,156	
2	202호	개방형원룸	30.76	26.12	4.64	18,737,400	244,154	
3	203호	개방형원룸	30.41	25.82	4.59	19,973,200	260,353	
4	204호	개방형원룸	30.41	25.82	4.59	19,973,200	260,353	
5	205호	개방형원룸	30.76	26.12	4.64	18,737,400	244,154	
6	206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8,820,900	245,156	
7	301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8,820,900	245,156	
8	302호	개방형원룸	30.76	26.12	4.64	18,737,400	244,154	
9	303호	개방형원룸	30.41	25.82	4.59	19,973,200	260,353	
10	304호	개방형원룸	30.41	25.82	4.59	19,973,200	260,353	
11	305호	개방형원룸	30.76	26.12	4.64	18,737,400	244,154	
12	306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8,820,900	245,156	
13	401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5,430,800	201,068	
14	402호	개방형원룸	30.76	26.12	4.64	15,380,700	200,400	
15	403호	분리형원룸(1.5룸)	38.64	32.8	5.84	20,223,700	263,526	베란다
17	404호	개방형원룸	32.46	27.56	4.90	16,382,700	213,426	
18	405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5,430,800	201,068	
19	501호	개방형원룸	30.88	26.22	4.66	14,963,200	195,056	
20	502호	개방형원룸	32.82	27.86	4.96	17,317,900	225,617	
21	503호	개방형원룸	32.82	27.86	4.96	17,317,900	225,617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개별시설

기본 옵션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난방방식	개별난방
관리비	50,000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 별 다용도실 (세탁기 비치 가능)

#### 공용시설

커뮤니티룸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수납장 등
1F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거치대 등
5F	옥상마당



###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분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중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만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인 이하	3,781,260원 이하
4인	4,315,641원 이하
5인	4,689,906원 이하
6인	5,144,224원 이하
7인	5,598,542원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㉔와 ②~⑤)을 모두 갖춘 분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 (출생일 1979.10.01.~2000.09.30.)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분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3,781,270원)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㉔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㉔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을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4.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 평가 방법

- 정량 : 심사 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 : 심사 평가위원회가 입주지원서 내용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 : 4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정량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10	10
		70% 이하	7	
		100% 이하	5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기간	3년 이상	20	20
		3년 미만	16	
		2년 미만	12	
		1년 미만	8	
	별도가점	5개 해당	10	10
		4개 해당	8	
		3개 해당	6	
		2개 해당	4	
		1개 해당	2	

※ 공동체 생활 (전체 기간 합산)

주거 공동체 생활(세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NPO 가입이력·활동기간, 공동체 기반의 사회혁신(사회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모임·행사·프로젝트 참여 이력 단, 기숙사, 직장, 군대 생활, 종교활동 제외

※ 별도가점 (항목 별 산정)

- ① 공동체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교육 수료(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매니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등)
- ② 마을/지역행사 참가 경험 ③ 자동차 무소유 ④ 봉사 활동경험 ⑤ 환경단체 회원 (가입 연수무관)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 경험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증빙자료 : 활동사진, 관련 서류 등)

○ 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배점	채점기준	합계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20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와 실천적 해결방안 · 친환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실천방안 · 입주자로서 실천해보고 싶은 친환경 생활 주제와 내용	60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20	·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 공동체 생활을 위한 본인의 재능 나눔 분야와 계획 · 갈등 발생 및 입주자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 신청자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의미	
자기소개서	20	· 입주 신청동기, 이웃과 녹색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자유양식 · 각 주택의 특징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함께 하고 싶은 활동	

## 5 신청방법

절차	내용 및 공지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녹색친구들 홈페이지	
주택개방	홈페이지 개방일정 공지/개별안내	
서류 접수	인터넷접수/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인터뷰	개별안내	
최종 입주자 발표	홈페이지/개별안내	대기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예정
계약체결	녹색친구들 회사 사무실	
입주	입주자와 협의 후 진행	- 계약 후 한달 이내 입주 - 계약금 완납 이후 입주 가능

### □ 신청 시 주택 3순위까지 등록 가능

(ex. 1순위 광성주택 000호 / 2순위 비전파크빌 000호 / 3순위 백년빌 000호)

### □ 신청제출방법

#### 1) 등기우편

- 신청구비서류 및 입주신청서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서류는 접수회차 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5층 녹색친구들 (우편번호 : 04004)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2) 인터넷 청약 신청

- 신청 링크 접속 후 신청접수 (신청 링크: <http://bit.ly/녹색친구들사회적주택> )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 일체 메일 전송 (이메일: [cohousing@greenfriends.co.kr](mailto:cohousing@greenfriends.co.kr) )
- 신청서는 접수 회차별 마감일까지 작성분으로 한함
- ※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원본은 최종 입주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

#### 3) 심사서류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택사진 도면 등은 녹색친구들 블로그에서 열람 가능 (<https://blog.naver.com/greenfriendsco>)

※ 반려동물은 본 주택 내에서 금지함 (단, 입주자회의에서 전체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

## 6. 입주자격 검증 등

###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대학생 : 신청자 본인, 청년(사회초년생) : 해당세대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1.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녹색친구들 입주 신청서	친환경 및 주거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기소개 등 * 제시된 <b>입주 신청서 작성</b>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b>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b>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 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b>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b> ※ <b>주거급여수급자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b>	1통
주민등록표등본	※ <b>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b>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 <아래 해당자만 제출> · <b>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b>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 확인 · 신청인 <b>본인기준으로 발급</b>	1통
임신진단서	· <b>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30.)</b>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 신청희망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b>태아포함 3인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b>	1통

## 2.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사회적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 년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u>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국민건강보험공단	
		· <u>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u>	가입은행	
	사회초년생	<b>[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b>		
		·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u>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국민건강보험공단	
		<b>[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b>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u> ※ <u>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u>	국민연금공단	
·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국민건강보험공단		
<b>[예술인]</b>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u>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국민건강보험공단			
<b>[공통 제출 서류]</b>				
·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u> ·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 <u>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u>	가입은행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



- 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ul>
	자

구분	산정방법
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ul>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고품(일시금으로 받는 고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	

				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b>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음</li> </ul> <table border="1" data-bbox="284 741 1469 871"> <thead> <tr> <th data-bbox="284 741 651 808">입주자격</th> <th data-bbox="651 741 1469 808">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808 651 871">대학생, 청년 계층</td> <td data-bbox="651 808 1469 871">6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다만,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 <b>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함</li> <li>-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계층의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li> <li>· <b>청년 계층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b></li> <li>·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li> <li>•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li> <li>-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ul> </li> <li>•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ul>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최대5%)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li> </ul>
<p>신청자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li> <li>•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li> </ul>

10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녹색친구들	070-4208-5375, 070-7721-5376
주거복지재단	031-738-439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019.09.30.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강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 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9 .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귀하

복학예정 확인서 [대학생用]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녹색친구들 사회적주택 [Blend.We] 입주 신청서

## ■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 증빙 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내용 (배점 20점)

-단체명 :

-활동내용 :

-활동기간 :

- 주거 공동체 생활(세어하우스, 사회적주택 등)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NPO 가입 이력·활동 기간
  - 공동체 기반의 사회 혁신(사회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모임·행사·프로젝트 참여 이력
- ※ 단, 기숙사, 회사, 군대 생활, 종교 활동 제외

### 2. 별도가점 (배점 10점)

- ① 공동체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교육 수료(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매니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등)
- ② 마을/지역 행사 참가 경험
- ③ 자동차 무소유
- ④ 봉사 활동 경험
- ⑤ 환경단체 회원 (가입 연수 무관)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 경험

## ■ 정성적 평가

※ 정성적 평가 작성방법 : 개조식(個條式)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각 항목당 300자 내외)

※ 정성적 평가 작성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므로 허위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1.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배점 20점)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와 실천적 해결 방안
- 친환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실천 방안
- 입주자로서 실천해 보고 싶은 친환경 생활 주제와 내용

### 2. 주거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배점 20점)

-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 공동체 생활을 위한 본인의 재능 나눔 분야와 계획
- 갈등 발생 및 입주자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
- 신청자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의미

### 3. 자기소개 (배점 20점)

※ 자유양식

- 입주 신청 동기
- 이웃과 녹색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등
- 녹색친구들 사회적주택(BLEND.WE)는 취향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본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소개해주세요.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